

부 산 가 정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드단○○○○ 인지

원 고 정AA

피 고 김BB

사 건 본 인 김CC

변 론 종 결 2014. 8. 21.

판 결 선 고 2014. 9. 25.

주 문

1.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.
2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,000,000원, 장래양육비로 2014. 4.부터 2019. 1. 8.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5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85,500,000원, 장래양육비로 2014. 4.부터 2020. 1. 8.까지 월 500,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중국국적의 원고는 1999년경 피고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포태하였고, 2000.

1. 9. 중국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.

2) 피고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원고에게 원고와 DD(아이를 지칭함)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끊었는데, 이 소송 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자 원고에게 '당신과 DD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'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.

3)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.

2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친권자 및 양육자

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, 피고가 원고의 사건본인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점, 사건본인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.

나. 양육비

피고가 사건본인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, 피고의 나이,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는 30,000,000원, 장래양육비는 2014. 4.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일까지 월 20만 원, 그 지급기일은 매달 말일로 정함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숙희